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2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허 영 · 박민규
곽상언 · 최기상 · 송옥주
김영배 · 박용갑 · 김주영
김 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보통합으로 인해 0~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·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,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(2027년 528조 추정)의 1%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(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 “교육기관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, 교육기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의 “1만분의 2,079”를 “1만분의 2,179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<u>교육기관</u> 및 <u>교육행정기관</u> 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경영하는 데 필요한 <u>재원(財源)</u>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 「 <u>영유아보육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<u>어린이집, 교육기관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교부금의 종류와 재원) ① (생략)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1. 해당 연도 내국세[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,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(稅目)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] 총액의 <u>1만분의 2,079</u> 2. (생략) ③·④ (생략)	제3조(교부금의 종류와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만분</u> <u>의 2,179</u> 2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